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인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(안 제5조제2항)

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과 동일하게 연임 가능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

나. 민간위원 해촉 사유 정비(안 제6조 및 제13조제3항)

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과 동일하게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, 두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민간위원의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,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</u> 	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하되, 두 차례만 --. <단서 삭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민간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</u>

<p><u>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</u></p> <p><u>5. 제14조를 위반한 경우</u></p> <p>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지 않은 경우</u></p> <p><u>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</u></p>
--	--